

보도 일시	2022. 4. 10.(일) 12:00 2022. 4. 11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4. 10.(일) 12:00	
담당 부서	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	책임자	과 장	심우섭 (044-202-8965)
		담당자	사무관	안유진 (044-202-8966)
			주무관	이민진 (044-202-8971)

고용노동부,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자율점검 실시 (4.11~5.31)

-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공 및 영업비밀 승인 이행 여부 점검

- 고용노동부(장관 안경덕)는 화학물질 제조·수입사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 자율점검표를 제작·배포하고 4.11(월)부터 5.31(화)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- 최근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 집단 중독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부실작성·유통이 적발됨에 따라,
-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주체인 화학물질 제조·수입사 스스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표를 배포한다.
- 화학물질 제조·수입사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를 활용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제출 현황,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, 영업비밀 승인 이행, 물질안전보건자료 현장 게시 및 근로자 교육 여부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.
- 고용노동부는 각 제조·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구성성분 및 함유량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, 영업비밀을 임의로 기재하지 않았는지, 화학제품의 법적 규제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을 당부하면서,
- 특히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대상임에도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

자료 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 숙지 등을 위해 가급적 조속히 가입할 것을 요청하였다.

- 자율점검표는 고용노동부 누리집,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,

*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-정책자료-정책자료실
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(msds.kosha.or.kr)-공지사항

- 또한 지방노동관서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, 한국화학산업연합회, 한국 석유화학협회,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화학물질 제조·수입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.

- 고용노동부는 자율점검 실시 후 7월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.

- 아울러, 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기재 및 미제출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 상향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교육 및 홍보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.

-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“물질안전보건자료 허위기재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”라며,

- “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각 화학물질 제조사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의무를 다하여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